(주)지지케이

건설신기술 관련 규정 및 적용 절차

1 건설신기술 지정

1)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상용화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성능이 확인된 기술을 대상으로 지정함.

2) 신청기술 상용화 단계의 심사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며,
① 정량화된 데이터를 취득한 기술신청서의 내용을 검토・심사하고,
② 신청기술이 적용된 시공현장 실사 및 성능 확인 과정을 거치며,
③ 다시 신청기술과 현장시설 동일성 및 신뢰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함.

2 건설신기술의 법률적 지원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에서는

- 「신기술 우선적용 의무 규정」으로,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 건설신기술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기술에 비해 우수한 것은 건설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이미 입증된 사항임.

- 또한, 「업무담당자 면책 규정」으로,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관련 공사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3 지자체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 등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028호)'

- 제10조(설계반영의무)의 ②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신기술의 설계반영을 의무화 하였음.

- 제13조(적용범위)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서울특별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음.

2)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4074호)'

- 제8조(설계반영의무)의 ②항에서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를 시행할 때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도지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신기술의 설계반영을 의무화 하였음.

- 또한 ⑤항에서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관련 공사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담당자 면책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3) 대구광역시, 신기술 활용「플랫폼」 구축

- 대구광역시는 신기술을 활용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신기술 사용 공무원의 면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4 건설신기술(제772호) 활용 실적

1) 건설신기술 지정과는 별도로 LH공사, 국방부, 인천도시공사, 지자체 등에서 신기술의 성능을 확인하여 우수신기술로 선정하는 한편,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현장에 적용하기로 결정함.

2) 신기술 사용협약서 체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청주시, 경북/경주시, 경기/화성시, 강원/횡성군 등에서 발주한 지열설비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한편, 각각「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체결하였음.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0호)

-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의 제③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④항에서는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건설신기술의 수의계약 요건 확인

- 「경북 경주시, 경기 화성시, 강원 횡성군」의 경우, 법률로 규정된 수의계약 요건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대구, 인천, 강원지방조달청)

붙임 : 건설신기술(제772호) 적용 실적표. (끝)

【 건설신기술(제772호) 활용 실적표 】

2018. 6. 15. 현재

No	사 업 명	발주처	용량	비 고
1	충주권역 농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100RT	설계적용
2	청원괴정지구 농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30RT	설계적용, 시공
3	농심 아산공장, 지열냉난방설비 구축	㈜농심	120RT	설계적용, 시공
4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사옥, 지열시스템	한국자산관리공사	130RT	설계적용, 시공
5	청주시 국민체육센터, 지열설비 공사	청주시	120RT	설계적용, 신기술협약, 시공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2공사 (복합민원센터) 지열설비 공사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280RT	설계적용, 신기술협약
7	나라키움정책연수원, 지열설비	한국자산관리공사	400RT	설계적용
8	한국식품연구원, 지열시스템	한국식품연구원	100RT	설계적용
9	경주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지열설비 설치	경상북도 경주시	80RT	설계적용, 수의계약, 납품설치
10	세종시 2-1, 임대주택(1,536세대) 지열시스템 시범사업	LH공사	40RT	설계적용, 신기술협약, 시공
11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신축사업, 지열설비 설치	국세청	380RT	설계적용
12	삼육대학교 중앙도서관, 지열냉난방시스템 구축사업	삼육대학교	50RT	설계적용, 시공
13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주민센터, 지열설비 설치	경기도 화성시	80RT	설계적용, 기술협약 수의계약, 납품설치
14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지열설비 설치	전북대학교	100RT	설계적용
15	횡성읍사무소 증축공사, 지열설비(수축열 포함) 설치	강원도 횡성군	45RT	설계적용, 수의계약, 납품설치